

국민편익 증진과 통신 생태계 지속발전을 위한

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

2023. 7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목 차

I . 추진 배경	1
II . 통신시장의 변화양상	2
III . 추진방안	4
붙임. 세부과제 추진일정	14

I 추진 배경

-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, 통화긴축에 따른 고금리, 공급망 불안(러·우 사태, 미·중 패권경쟁) 등으로 경기둔화가 심해지는 양상

※ 세계은행의 '23년 세계 성장률 전망은 1.7%로, 이는 최근 30년 중 3번째로 낮은 수준

- 경기둔화 현상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쳐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가운데,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 지출도 증가 추세



- 과거 통신사는 과감한 투자*로 최고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적 ICT 제조업, 독자적 플랫폼을 보유한 ICT 강국이 되는데 큰 기여

* (투자성과) TDX('86) → CDMA('96) → ADSL('99) → 3G('02) → 4G('11) → 5G('19)

- 하지만, 현재 성장모델* 약화, 탈통신 등으로 인한 소극적인 인프라 투자 경향**은 미래 ICT 경쟁력에 우려 야기

* (통신사의 수익창출 모델 변화) 전화 → 초고속인터넷 → 3G → IPTV → LTE·5G

** OECD 국가 중 설비투자(CAPEX)/매출액 비율 순위: ('10) 16위 → ('21) 25위(GSMA, '22)

- 아울러, 정부의 경쟁촉진 정책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특성으로 인해 통신3사 과점체계가 구축되어 요금, 마케팅 경쟁이 미흡

- 따라서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를 담보할 수 있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전략 마련이 시급

※ (비상경제민생회의(2.15), 대통령 지시사항) "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...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"

- 통신시장 경쟁의 유효성을 제고하여 '투자-성장-재투자'의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과감한 통신정책 수립·추진

II 통신시장의 변화양상

가) 통신3사 중심의 과점구조 고착화

- **[민영화·성장]** 초기 통신산업은 국가주도였으나,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공사화·민영화*를 거쳐 경쟁체제 진입

* 데이콤(구 한국데이터통신) 민영화('93년), SK의 한국이동통신 인수('94년), KT 민영화('02년)

- 정부의 통신시장 민간 개방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성장모델(초고속인터넷, 이동통신, IPTV)을 지속 발굴하면서 통신시장 급성장*

* (전체 ICT 매출액에서 통신서비스 비중) 19.2%('99) → 31.9%('04) → 38.1%('09) → 36.8%('20)

- **[유효경쟁정책]** 통신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며,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 실현을 위해 M&A를 거치며 독과점화 되는 특성이 있어,

- 정부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억제, 후발 사업자 육성 위한 비대칭규제(접속료 차등 등) 등 유효경쟁 정책(참고3) 시행

※ 이를 통해 SKT·KT 중심의 경쟁상황에서 LGU+가 1·2위 사업자에 비견되는 3위 사업자로 성장하는 성과(점유율 약 20%, '22)

- **[통신3사 과점체제]** 정부의 경쟁촉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7차례 제4 이통사의 진입 무산, 경쟁력 있는 알뜰폰사 부재*로 과점체제 유지 중

* 알뜰폰 시장의 1위 사업자(KB국민은행, 이통 자회사제외)의 전체 이통시장 점유율은 약 0.5%

- 통신3사 과점은 투자·요금·마케팅 경쟁을 약화시켜 국민 편익을 저하시키고, 디지털경제 시대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에도 우려 야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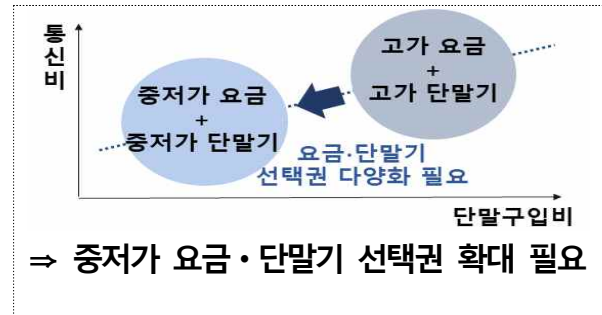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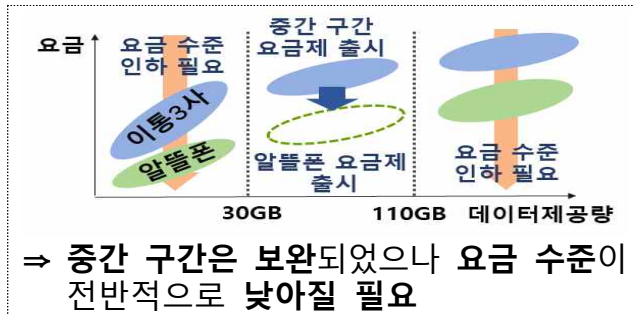
나) 과점구조 고착화의 폐해는 국민에게 전가

- **[요금]** 5G 요금 인하, 중간 구간 보완 등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금수준·출시시점 등에 대해 수요와 공급간 갈등 지속

- 통신3사 요금제는 저용량(10GB↓)·대용량(110GB↑) 구간으로 제한되어 데이터 이용량이 많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고가 요금제·단말 선택 강요

- 5G 요금제는 출시 후 4년이 지나서야 중간 데이터 구간을 보완 하였고, 최저 요금 수준은 여전히 4만원대로 이용자 후생 저하

< 이동통신 요금제 · 단말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 >



□ **[마케팅]** 통신3사가 새로운 가입자 유인을 위한 적극적 마케팅 경쟁보다는 기존 가입고객 유지에 집중하면서 통신사간 전환이 감소

○ 단말기유통법 시행('14~)으로 단말 유통시장을 투명화하여 단말기 지원금의 이용자 차별 완화, 자급단말 시장 성장(전체의 25% 차지, '22)에 기여했으나,

- 단말 교체주기 증가, 결합상품 등을 통한 이용자 고착(Lock-in) 강화로 이용자의 사업자 전환 수준을 나타내는 번호이동 건수는 감소추세

※ (번호이동 건수) 1,094만('10년) → 865만('14년) → 566만('18년) → 453만('22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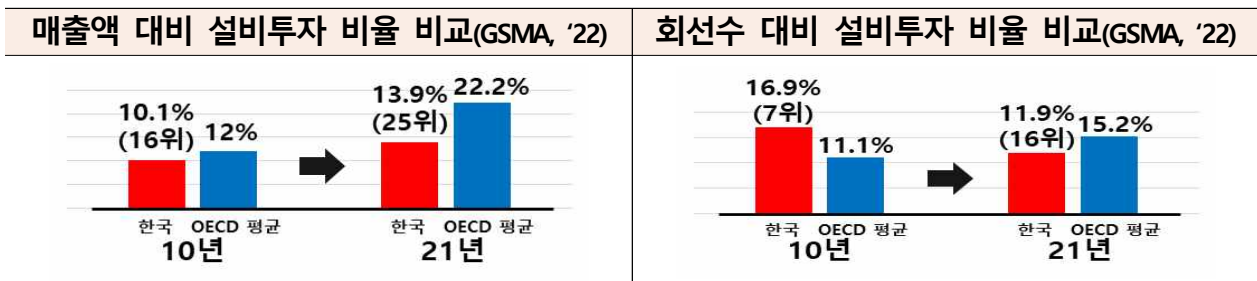
○ 5G 서비스 등장 이후 단말 수요도 고가 단말 위주로 집중되면서, 중저가 단말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이용자의 구입부담도 증가 양상

□ **[투자]** 과거 통신사 · 정부의 과감한 투자*를 통해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여 우리가 ICT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나,

* 국내 통신사는 '02~'22년 간 초고속인터넷, 3·4·5G 망 구축에 총 146.82조원(누적)을 투자

○ 5G 28GHz 주파수 대역은 통신사의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 취소('22.12월(KT, LGU+), '23.6월(SKT))되는 등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에 우려

※ 현재 전 세계 23개국 28GHz 주파수 할당 및 서비스 준비 중(美 버라이즌, '23.4월 5만국 설치)



○ 아울러 5G 서비스 출시 이후, 실내 · 교외지 등에서 5G커버리지가 부족하여 체감 품질에 대한 이용자 불만 제기

Ⅲ 추진 방안

비전

통신시장 경쟁촉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

추진 전략

전략 1

통신시장
경쟁구조 개선

전략 2

경쟁 활성화 통한
국민 편익 제고

전략 3

유무선 통신
인프라 투자 활성화

세부 방안

신규社
진입 지원

요금제도 개선

무선망
투자 촉진

경쟁력 있는
알뜰폰社
성장 지원

이용자 선택권 확대

품질정보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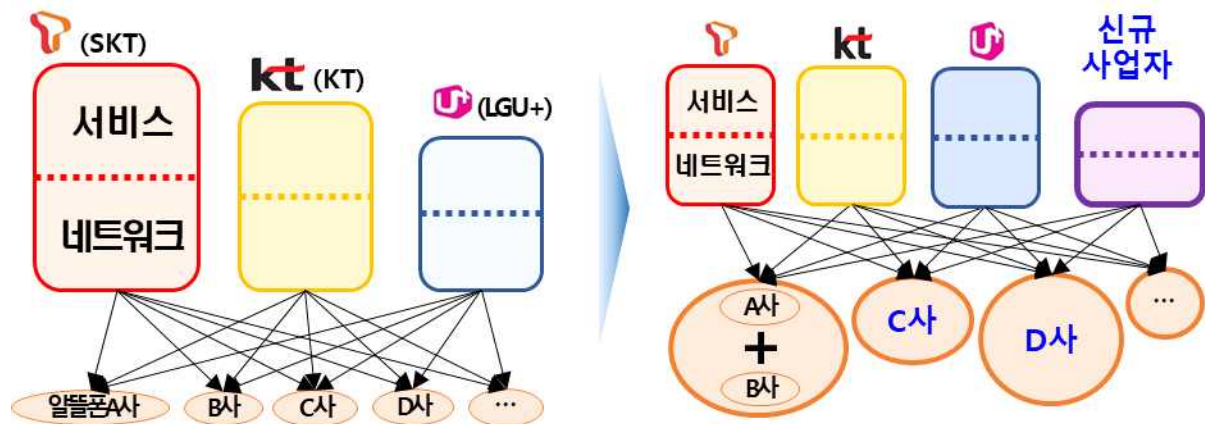
유선망
고도화

전략1

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

- ◆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서비스 또는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(신규통신社, 알뜰폰社) 등장을 지원하여, 현재의 과점구조를 타파

<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방향(예시) >



1-1.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 지원

- **(주파수 할당)** 신규사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GHz 대역 전용주파수* 및 앵커주파수(700MHz 또는 1.8GHz, 공개토론회 후 확정) 할당
 - * 시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3년간 신규사 전용대역으로 공급
 -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대가 부담 완화(이용기간에 비례) 측면과 6G 상용화 예상 일정('28~'30년 등) 등을 고려하여 5년으로 추진
 - 5G 최초 할당* 대비 할당대가·조건 등이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수준으로 최저경쟁가격** 산정 및 망 구축 의무 부과
 - * '18년 5G 최초 할당 당시, 2,072억원의 최저경쟁가격과 사업자당 15,000대의 망 구축 의무 부과
 - **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부가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한 이후 가격경쟁(경매)을 통하여 최종 확정
 - 할당대가의 납부 시, 신규사업자의 사업초기 진입 부담을 고려하여 후기부담이 증가*하도록 납부방식 개선
 - * (현행) 1년차에 총액의 25% 납부(이후 균등 분납) ⇒ (개선) 1년차에 총액의 10% 납부(이후 점증 분납)
 -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(예: 3.7GHz 등)은 28GHz 구축을 추진하는 신규사업자가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순차 공급 검토
 - ※ 신규사업자 희망시, 통신시장 경쟁여건 및 망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검토
- **(진입장벽 완화)** 신규사업자가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, 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(로밍)할 수 있도록 개선
 - 자사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도 통신사·시설관리기관·CATV의 설비(관로, 케이블 등)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절차·방식 등 개선
 - 신규사 신청이 있는 경우, 통신시장에 외국인 시장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(공익성 심사, 간접투자제도 등) 개선 추진(~'24, 法令)
- **(사업운영 지원)** 사업 초기단계의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 금융을 지원(최대 4천억원)하고 세액공제, 단말유통* 등 지원
 - * 정부-신규사-제조사-유통망 간 협의체 구성하여 신규 단말 출시 및 유통지원
 - 다양한 분야(의료, 제조, 안전 등)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5G 융합서비스를 발굴하여 신규 5G시장 창출 지원

1-2.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 성장 지원

- **(요금경쟁력 제고)** 알뜰폰社가 장기적으로 설비 등에 투자하여 통신3사와 실질경쟁 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(일몰폐지)(~'23, 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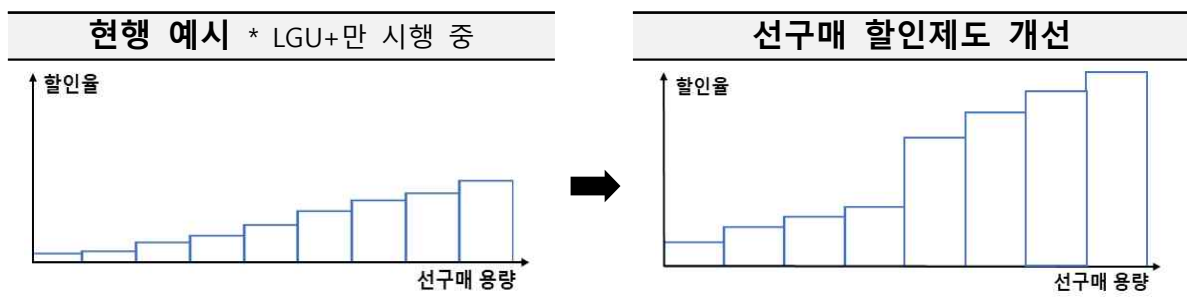
※ 현재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유효기간 만료로 일몰('22.9월)된 상황

-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시장변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산정방식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알뜰폰社 간 서비스 경쟁 유도(~'23, 法)

※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는 Retail-Minus 방식으로만 도매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

- 자체설비 보유社·다량 가입자 보유社에 데이터 대량 선구매 시 할인을 제공해 시장 내 M&A 활성화와 더욱 저렴한 자체 요금제 출시 유도('23~)

< 예시: 데이터 선구매 할인 방식 개선방향 >



- **(알뜰폰 생태계 강화)**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 개선

* 현재 자회사 점유율 규제(알뜰폰 시장의 50% 초과금지)를 시장변화를 고려하여 개선 (완성차 회선 제외한 알뜰폰 시장의 50% 초과금지)하고,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산정방식 재검토

※ 향후 시장상황 고려하여 도매제공 의무사업자(現 SKT)를 통신3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

- 중소社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온·오프라인 유통망(알뜰폰 허브, 우체국) 등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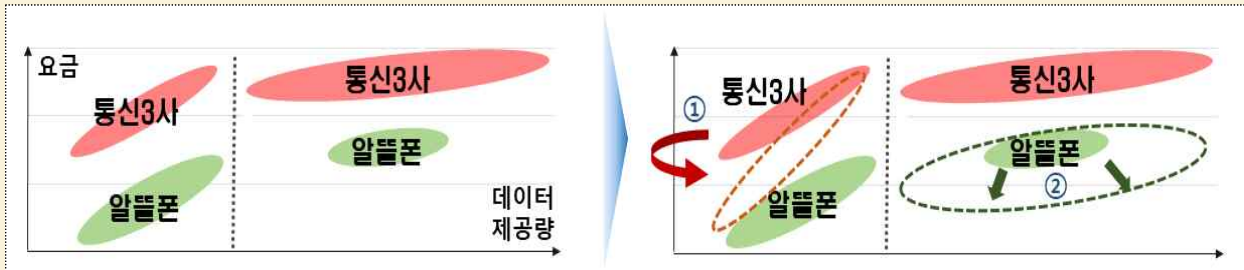
- **(알뜰폰 이미지 개선)** 알뜰폰社별 이용 불편사항을 조사·발표(알뜰폰협회-소비자단체 협업)하여 경쟁력 있는 알뜰폰社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

- 또한, 주 이용층 변화(MZ세대 등)에 걸맞는 알뜰폰 브랜드 재정립도 추진

전략2

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의 제고

- ◆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장 참여도를 제고하고, 이용자 수요 중심의 요금 경쟁 유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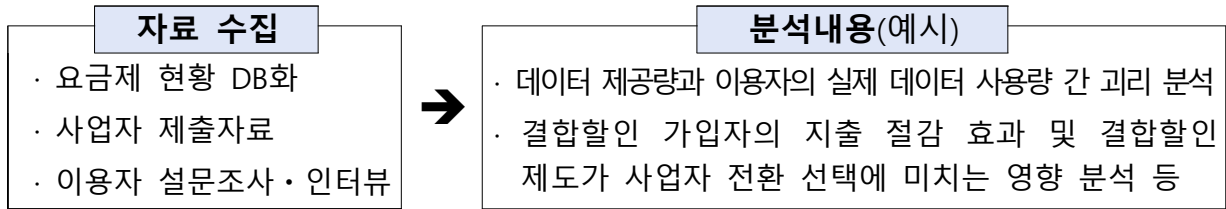
- ◆ ‘고가단말 + 고가요금제’ 결합에 따른 이용자 부담과 통신사 전환 비용을 완화함으로써 이용자의 이동성 제고 및 마케팅 경쟁 환경 조성



2-1. 통신요금 관련 제도개선

- (요금 인하 유도) 다양하고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 출시 지속 독려, 통신3사의 5G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*하는 요금체제로 개선 추진('23~)
 - * 최저구간 요금 하향, 요금제 세분화 등을 통해 이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 선택 가능토록 개선
- 도매대가를 인하하여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 여건 마련, 해외로밍* 이용부담 완화 및 LTE 요금 인하 협의 추진
 - * 일본·동남아시아 국가와 로밍요금 인하를 위한 협력 강화
- (최적요금제 고지) 통신사가 이용자의 이용패턴 등을 분석하여 개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(예:연2회)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('23~, 法)
 - 또한,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도입하여 이용자가 통신사를 쉽게 비교·탐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요금제 추천 서비스 활성화

- **(요금 분석 보고서 발간)**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요금 관련 자료를 수집·분석하여 주기적으로 통신요금 분석보고서 발간('23~, 法)



- 분석결과에 기반해 이용자의 합리적 소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, 정보 공개를 통해 통신사의 자발적 요금제 개선 유도

- **(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)** 주된 생활지역에 5G 망 구축이 미흡해도 5G 요금제를 가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개선하고,

- 단말종류에 상관없이 원하는 요금제(3G, LTE, 5G 등)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요금제 가입 강제를 금지('23~, 法)하여 국민의 요금제 선택권 강화

※ 현재 5G 자급제 단말로는 제약 없이 LTE·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나, 통신사항 5G 단말의 경우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(uSIM기변을 통해 LTE 요금제로의 변경은 가능)

2-2. 이용자 선택권 확대

- **(마케팅 활성화)** 유통시장 경쟁 활성화 및 단말 구입부담 완화를 위해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→30%로 상향('23~, 法/방통위)

- 향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방통위와 협의하여 단말기 유통법 개선 필요성 및 방향 검토 추진

- **(중고폰 활성화)** 일정 조건*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를 공시하고 판매자·구매자간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장 신뢰도 제고('23~, 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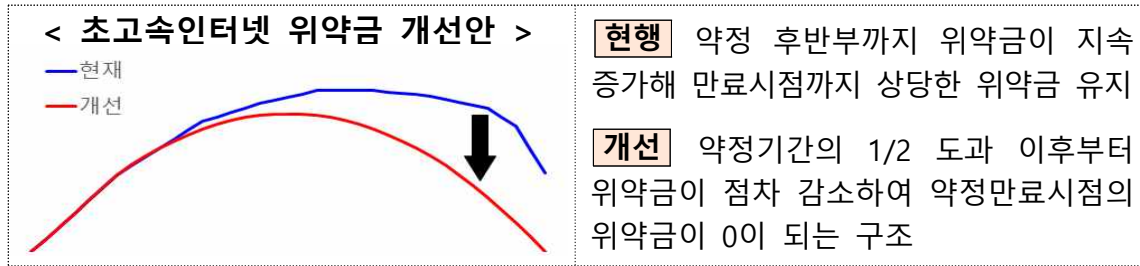
* 가격정보 공시, 성능확인서 발급, 개인정보 삭제 프로그램 구비, 일정기간 내 교환·환불 등

- 시장 투명화 효과를 고려하여 중고폰 사업자의 세금부담 완화 등 검토 추진

- **(단말 선택권 확대)** 고가 모델 중심의 단말 시장에서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제조사와 협의하여 다양한 중저가 모델 출시 유도('23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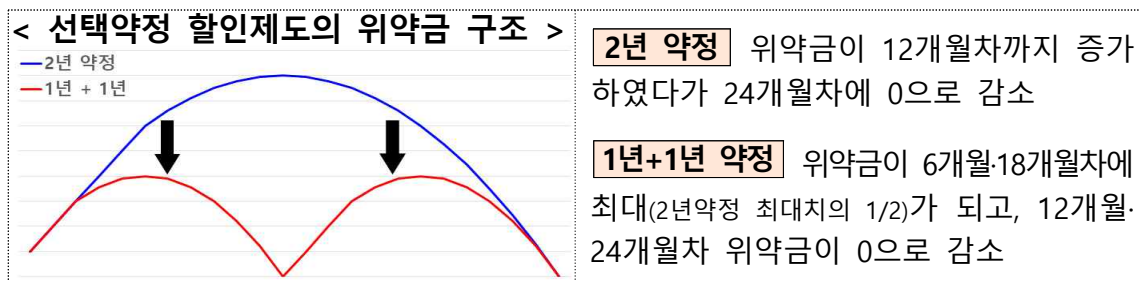
- 고가 단말기 및 요금제에 집중된 지원금 지급,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행위 등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(방통위)

- **(전환장벽 완화)** 초고속인터넷의 약정 후반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하여 이용자의 해지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사 이동권 강화('23~)



-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자의 사전예약을 받아 자동갱신되는 1년+1년 구조* 중심으로 개선

* 1년, 2년 선택약정 할인율은 25%로 동일하며, 1년 약정에서 위약금이 더 낮음



2-3. 통신서비스 품질 정보 제공 강화

- **(품질평가 개선)**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이용자 참여기반 평가를 확대하고, 품질 미흡지역을 세분화하여 상세한 분석결과 제공('24~)

※ 품질 미흡지역은 차기년도에 재점검하여 통신사가 개선 노력을 하였는지 확인

- 이용자 품질측정 시스템*을 통한 이용자 평가를 확대하고, 품질 미흡 지점 및 품질저하 시간대 등 품질개선이 필요한 취약점을 상세 분석

* 무선인터넷 품질측정 앱, 유선인터넷 품질측정 웹사이트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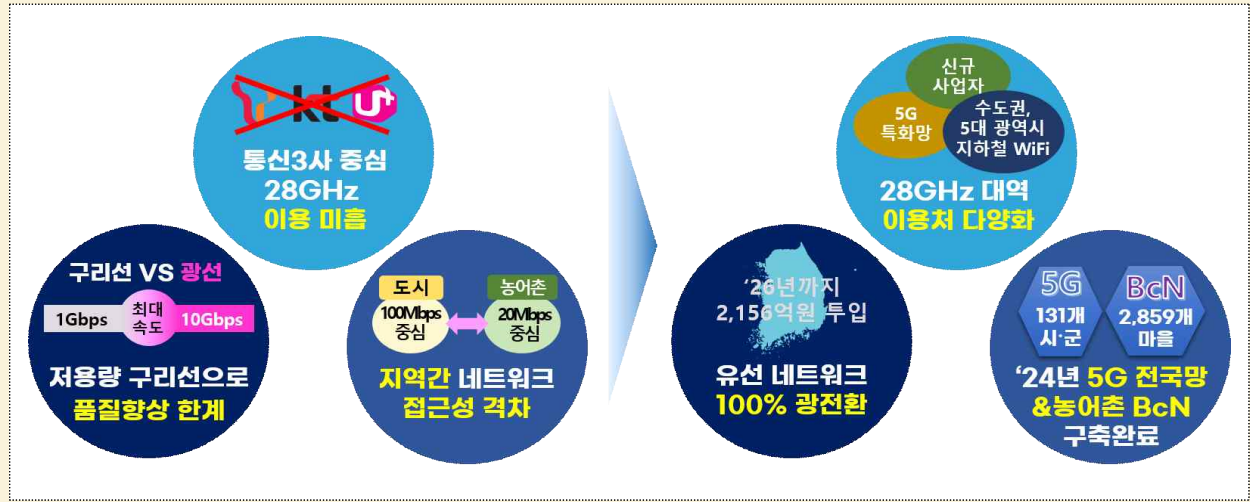
- **(품질정보 활용도 제고)** 이용자가 통신품질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측정 데이터를 개방, 다양한 연구·서비스 개발에 활용 지원('24~)

- 측정된 품질 데이터를 Open API 형식으로 공공데이터포털 등에 정보 공개하여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*하도록 제공

* (예시) 통신품질을 간편 비교해 주는 민간 앱 개발 등

전략3 유·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

- ◆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유·무선 통신 인프라의 지속적 고도화를 위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선도 기반 조성



3-1. 무선 네트워크 투자촉진

- **(5G 전국망)** 음영구역 해소를 위한 5G 공동망(131개 시·군) 조속 구축(~'24.1Q)
※ '22.12월 기준 72개 시·군 내 418개 마을 5G 공동망 구축 완료
- **(5G 고도화)** 5G 28GHz 대역을 기존 통신3사 중심에서 산업용 5G 특화망, 지하철 Wifi, 신규사업자 확장하여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(~'27)
※ 3.7GHz 대역 공급은 △국민편익, △투자확대, △주파수 경쟁적 수요 등을 종합적 고려 검토
- 지하철 WiFi 이용 환경 개선에 의지를 보이는 통신사 등을 통해 28GHz 5G 특화망 대역 등을 활용하여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지하철 WiFi 인프라 구축
- **(6G 기술선점)** 6G 주도권 선점을 위해 원천기술 연구에 더해 오픈랜 등 산업 기술개발 병행('24~'28, 6,253억원 예타 추진)

3-2. 유선 네트워크 고도화

- **(지역격차 해소)** 농어촌(현재 2,859개 마을) 초고속광대역망 조기 구축('25→'24)
※ 현재 약 63%(1,806개) 구축 완료('23.4월)했으며, 추후 지자체 구축수요 반영 예정
- **(광인프라 경쟁력 확보)** 과거 음성전화 용으로 구축되어 남아있는 구리선(現 구리선: 26%, 광케이블: 74%)을 100% 광케이블로 전환 추진(~'2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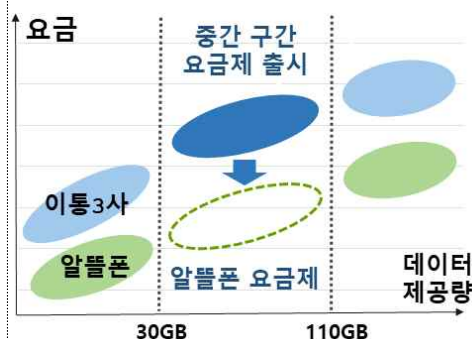
참고1 비상경제민생회의^[2.15] 이후 통신시장 경쟁촉진 노력 및 성과

□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재적 특성을 가진 통신비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선, 요금제 다양화 및 신규사 진입유도 중

① (요금) 이용자 수요가 높은 5G 요금제 중간구간(30~110GB) 및 청년·고령층의 선호 구간에서 혜택을 강화한 신규요금제 55종 출시('23.3~7월)

* SKT 25종, LGU+ 23종, KT 7종+청년 데이터 2배 확대 요금제 신설

< 요금제 다양화 >



< 통신비 부담 완화 기대효과(SKT 예시) >

- (일반) 월 35GB 이용자는 월 7천원(10%) 절감
※ 69,000원(110GB) 요금제 → 62,000원(37GB) 요금제로 변경
- (청년) 월 30GB 이용하는 청년은 월 1만원(14%) 절감
※ 69,000원(110GB) 요금제 → 59,000원(36GB) 요금제로 변경
- (고령층) 월 10GB 이용하는 고령층은 월 4천원(8%) 절감
※ 49,000원(8GB) 요금제 → 45,000원(10GB) 요금제로 변경
- (알뜰폰) 일반 요금제 대비 월 30~40% 절감 가능

- 청년 로밍요금 할인, 가족간 데이터 공유 등 로밍 부담 완화(SKT, '23.6월)

② (신규사업자) 경쟁력 있는 신규사 진입 지원방안 발표(1.31) 후, 금융·유통업계 등에 정책설명 및 의견수렴

③ (알뜰폰) 은행권의 알뜰폰 사업 허용(4.12, 금융위)을 통해,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공식진출 하면서 사업자간 요금경쟁 활성화

- (5G) S社 74GB 요금제 6.6만원 vs 알뜰폰社 동일 요금제 최저 4.2만원
- (LTE) S社 150GB 요금제 7.9만원 vs 알뜰폰社 221GB 요금제 최저 1.4만원 (7개월이후 3.9만원) 수준('23.7월 기준)

※ MZ세대를 중심으로 자급제 단말을 사용하면서 알뜰폰 서비스를 가입하는 '합리적 소비 트렌드'가 확산 중(알뜰폰 휴대폰 가입자 780만의 91%가 자급단말 이용, '23.4월)

참고2

통신서비스 주요 통계

□ 가계통신비 통계

(단위 : 천 원)

구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전년대비
소비지출	2,457	2,400	2,495	2,640	▲ 5.8%
통신	123	120	124	128	▲ 3.4%
통신서비스	94	92	97	99	▲ 2.5%
통신기기	28	27	27	29	▲ 7.2%
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	5.0%	5.0%	5.0%	4.9%	

※ 출처 : 통계청 가계동향조사

□ 이동통신 가입자 통계

(단위 : 만 회선)

구분	2G	3G	4G	5G	합계
SKT	- (-)	84 (1.1%)	1,579 (20.1%)	1,434 (18.2%)	3,097 (39.3%)
KT	- (-)	61 (0.8%)	796 (10.1%)	900 (11.4%)	1,757 (22.3%)
LGU ⁺	4 (0.1%)	- (-)	986 (12.5%)	644 (8.2%)	1,634 (20.7%)
알뜰폰	1 (0.0%)	95 (1.2%)	1,269 (16.1%)	24 (0.3%)	1,389 (17.6%)
합계	5 (0.1%)	240 (3.1%)	4,630 (58.8%)	3,002 (38.1%)	7,877 (100%)

□ 통신사 재무현황

(단위 : 억 원)

구분	'19년	'20년	'21년	'22년
무선매출	226,043	232,488	231,222	235,313
영업이익	25,227	29,702	33,960	38,447
마케팅비	78,913	82,447	82,471	81,097
투자비	95,965	82,761	82,020	82,985

참고3

통신시장 유효경쟁체제 조성을 위한 그 간의 정책적 노력

□ 1위 사업자 시장지배력 견제, 후발 사업자 성장을 위한 비대칭 규제 실시

- (상호접속료 차등) 사업자간 이익규모 격차를 조정함으로써 외부의 요금인하 압박을 완화하고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요금경쟁 촉진을 위해 **상호접속료 차등정책** 시행('02~'16년)
- (이용약관 인가제) 이용약관 신설·변경 등은 신고가 원칙이나, 시장지배력 등을 고려해 정부가 지정·고시하는 사업자는 인가를 받도록 함(~'20.12월)
- (도매제공 의무)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도매제공 의무를 부여
 - ※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3년 단위로 일몰기한 연장('13년, '17년, '20년), 현재 일몰
- (설비제공) 전주·광케이블·시설 등 사업에 필수적이지만 단기간에 포설하기 어려운 주요 설비들을 후발 사업자에게 임대토록 함('03년~)
 - ※ 유사한 취지의 제도로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,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이 있음
 - 통신4사(KT, LGU+, SKB, SKT), 시설관리기관(한국전력공사, 지하철공사 등)에 제공의무 부여

□ 이용자의 자유로운 사업자 선택 및 번호이동 활성화

- (번호이동성 및 010번호 통합) 이용자가 통신사를 변경하여도 기존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동통신 식별번호를 **010으로 통합**('04년~)
 - ※ 번호이동 제도도입 전에는 국가가 부여한 번호가 마케팅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 발생
- (자급제 활성화) 이통3사 공통출시 단말은 자급단말로 출시하는 등 **자급단말 출시 확대 및 유통채널 다양화***로 자급제 확산기반 마련('18.12월)
 - * 쿠팡, 11번가 등 온라인몰 및 하이마트, 전자랜드 등 오프라인 매장
 - ※ 자급단말 이용률(23.1월): (이통3사) 16%, (알뜰폰) 90.3%, (이통3사+알뜰폰) 25.9%

□ 유효경쟁체제 조성 이후, 사업자 간 자발적 경쟁 기대 하에 규제 완화

- 3위 사업자(LGU+) 성장(통신시장 3강 체제 구축) 이후, 사업자 간 자발적 경쟁 기대 하에 **상호접속료 차등정책 폐지**('17년), **요금 인가제 폐지 및 유보신고제 도입**('20년)
 - ※ (요금규제) 국가승인(~'91년) → 인가 원칙, 신고 예외(~'95년) → 신고 원칙, 인가 예외(~'20.12월) → 신고 원칙, 시장지배적 사업자 유보신고(~현재)
- (진입규제 완화)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**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**('19.6월)
 - ※ 과거 기간통신사업 희망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허가과 전파법상 주파수 할당을 동시에 신청하여 모두 통과해야 했음

분야	세부 과제	향후일정
1.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		
[1]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 지원		
	① 신규사업자 5G 주파수 할당공고	~'23년
	② 설비 제공·공동이용 등 진입규제 개선	~'24년
	③ 신규사업자 진입 시 사업운영 지원	'23년~
[2]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 육성		
	① 도매제공 의무제도 재도입(법개정)	~'23년
	② 도매대가 산정방식 다양화(법개정)	~'23년
	③ 알뜰폰 생태계 강화 및 이미지 개선	'23년~
2. 경쟁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편익 제고		
[1] 통신요금 관련 제도개선		
	① 통신요금 인하 유도	'23년~
	②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 법안 발의	~'23년
	③ 통신요금 분석 보고서 발간 법안 발의	~'23년
	④ 특정 요금제 가입 강제 금지 법안 발의	~'23년
[2] 이용자 선택권 확대		
	① 초고속인터넷 약정 위약금 인하	~'23년
	②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(법개정)	'23년~
	③ 중고폰 활성화 관련 법안 발의	~'23년
	④ 중저가폰 출시 유도	'23년~
[3] 통신서비스 품질정보 제공 강화		
	①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개선	'24년~
	② 품질평가 측정 데이터 개방 등 활용도 제고	'24년~
3.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		
[1] 무선 네트워크 투자 촉진		
	① 5G 전국망 구축	~'24년 1분기
	② 지하철 WiFi 구축 등을 위한 28GHz 주파수 공급	'23년~
	③ 6G 산업기술 개발(R&D)	'24년~
	④ Pre-6G 기술 시연 및 융합 생태계 조성	~'26년
[2] 유선 네트워크 고도화		
	① 농어촌 초고속광대역망(BcN) 조기 구축	~'24년
	② 유선 네트워크 광전환 및 관련 제도개선	~'26년